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이변,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 등의 추락사고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, 옥외광고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·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6월 9일

국무총리 정 세 균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

◉법률 제17380호
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(이하 “위험물운반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
2.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

제21조제1항 중 “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”를 “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탱크시험자에 대하여”를 “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”로 한다.

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위험물운송자”를 “위험물운반자·위험물운송자”로 한다.

제31조제9호 중 “제20조제2항의 규정에”를 “제20조제3항에”로 한다.

제35조제7호 중 “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”을 “제20조제3항 단서를”로 한다.

제37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험물운반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운반자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,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며,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6월 9일

국무총리 정 세 균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 장관 진 영

◉법률 제17381호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(이하 “풍수해 종합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제12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
2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붕괴위험지역
3.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위험저수지